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7,258,086	7,417,743
일반회계	241,314,211	7,239,426
특별회계	5,943,875	178,316
기타특별회계	5,943,875	178,31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84,538	50,53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667,973	50,039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62,334	25,870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735,548	22,066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15,000	6,45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555,025	16,65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2,000	1,56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55,791	4,674
기반시설특별회계	15,666	4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해당없음"과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해당없음"과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해당없음"과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54,42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